

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41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요건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‘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(안) ‘에 맞춰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밀집기준 완화(안 제4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구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단서 조항 신설(안 제4조)
- 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해당구역 상인 동의 요건 완화 및 토지·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삭제(안 제5조)
- 라. 그 밖에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 지정 기준을 완화할 시 지금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규모를 파악하여 충분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